

의안번호	2211970
의 퇴 인	황운하의원
회 답 일	2025.11.14.
추계번호	25B43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6조의2 (보험 가입)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관리 중에 발생한 지반침하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46조의2 (보험 가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관리 중에 발생한 지반침하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개발사업자이거나 지하시설물관리자인 경우 해당 보험에 가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등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 연도별 보험가입 물량과 보험 가입액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 정보가 부재하여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다만, 재난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대형 재난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을 명시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음 ([참고자료] 참조)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재난배상책임보험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개요)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¹⁾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하도록 규정

- (보장특성)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
- (보상한도: 가입금액)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

<보상한도 상세내역>

담보	보장금액	
대인	사망	1명당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사고당 한도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	사고당 10억원	

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자료: 행정안전부

1)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 가입대상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²⁾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1. (관광)숙박시설	2. 과학관	3. 물류창고	4. 박물관	5. 미술관
6. 휴게·일반음식점	7. 장례식장	8. 경륜장	9. 경정장	10. 장외매장
11. 국제회의시설	12. 지하(도)상가	13. 도서관	14. 주유소	15.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시설	17.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18. 경마장	19. 장외발매소	20. 농어촌민박

2)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